

기자간담회

# 작가들은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 일시 : 2024년 1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회** 이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현장발언

염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지회장)  
성상민 (작가노조 준비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책발언**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기자간담회]

## 작가들은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 ○ 취지

- 2022년 △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연구자, △ 사측(방송, 공연, 음반업계), △ 노측(문화예술노동연대, 공연노조, 출판노조)이 참여한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 이 진행됨. 이후 2023년 정부는 예술현장을 배제하고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관계부처 회의’ 를 진행하였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싸워온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적용 전면적용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2023년 8월 국회토론회와 12월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포럼을 통해 확인된 바는 △ 윤석열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 △ 현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정부 논의가 우려스럽다는 것임.

- 이에 예술인 중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우선 배제될 가능성이 큰 작가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면서 △ 각 현장의 실태를 드러내고, △ 정부 논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 예술현장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함.

○ 일시 : 2024년 1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 ○ 사회

- 이썸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 현장발언

- 염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지회장)

- 성상민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 정책발언

-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 현장발언1

### - 염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 염정열입니다.

흔히 ‘산재’ 라고 하면 일하는 현장에서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등의 사고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방송구성작가 중 예능 작가의 경우 80% 이상의 업무가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장소 헌팅, 인터뷰어 미팅, 사전촬영, 녹화, 현장 촬영 등 스튜디오 현장이나 외부 촬영장에서 이뤄지지요.

시사교양 작가의 경우는 80% 이상의 업무가 내부에서 이뤄집니다. 취재, 전화 섭외, 자료조사, 촬영구성안 작성, 원고와 자막 작업, 편집구성안 작성 등 방송사나 사무실, 작업실, 집 등에서 하는 업무고 20% 정도는 헌팅이나 촬영 현장을 가거나 합니다.

만약 헌팅지나 촬영 현장 혹은 그 현장을 오가는 길에서 사고가 발생 시, 방송작가들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방송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나 입원 시,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치료와 입원 하는 동안 일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원고료도 받지 못합니다.

혹여 좋은 방송사, 좋은 PD를 만났다면 그 작가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다른 작가로 대체하지 않고 기다려주거나 치료비의 일부, 위로금 지급 등의 배려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방송작가들은 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자비로 넣는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예술인산재보험이 있긴 합니다. 현재 자비로 납부,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방송작가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보험입니다.

방송작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직업병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작가들이 자주 겪는 질환은 노트북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장시간 앉아서 하는 업무로 디스크, 거북목증후군,  
편집 영상 확인 등 오랫동안 모니터를 보다 보니 생기는 안구건조증, 시력약화 등  
입니다.

그리고, 섭외하다 보면 저희는 별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고 그로 인해 많은 방송작가가 소화  
불량, 과민성 대장염 등의 질환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현재의 예술인산재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등의 보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생긴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가 방송작가들에게는  
없습니다. 원고료에서 종합소득세 3.3%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말입니다.

현재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은 언론노조의 미디어공제회에 당연 가입되어  
풀빵공제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미디어비정규직 사업의 일환이지요.

국가로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그나마 작은 안전망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일도 어찌면 너무나 버겁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보는 사회가,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작가들은 요구합니다.  
방송작가들의 예술인산재보험의 당연가입은 물론이요.  
예술인산재보험 안에 방송구성작가직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장을 명시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현장발언2

### -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

K-컨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웹툰, 웹소설 작가의 연봉이 1억이라는 말이 떠도는 세상입니다.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등 작가, 즉 창작노동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까지 많이 버는 꿈의 직업같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그 어두운 면모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즐겨보는 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작가의 건강 사정으로 인해 휴재한다는 작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란 점에서 드러납니다.

현재 작가들이 어떠한 노동환경에서 어떠한 질환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통계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웹툰만이 22년 만에 발표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작가 실태조사>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웹툰 작가들의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과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 조사>가 있어 이 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려 합니다. 먼저 <웹툰 작가 실태조사>를 보면 웹툰 작가의 연령대는 29세 이하가 33%, 30대가 47.6%, 40대 이상이 19.3%로 가장 건강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가득 모인 직업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이 나잇대의 건강 수준이 아니면 못할 직업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통계인데요, 평균 10.5시간, 5.8일 일하고 창작 활동 애로사항 1위는 85.6%의 작업/휴식 시간 부족, 2위 82.7% 경제적 어려움, 3위 82.5% 정신육체 건강 악화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0.6%가 악성 댓글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이어지는 건강 상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응답한 웹툰 작가의 60%가 근골격계 통증, 목, 어깨, 허리, 팔, 손/손목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답변을 했고,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에서 우울증상은 기준 이상이 28.74%, 불면증이 28.23%였습니다. 자살에 대한 질문에서 구체적인 자살계획과 경험이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의 보고보다 약 4배의 수치로 상당히 높아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두 조사는 웹툰 작가에 한정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웹소설과 일러스트 직군도 포함하여 우리 전국여성노조에서 20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보호방안>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결과도 아까 조사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만 30세.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2.5시간 (웹툰 59시간, 웹소설 35.4시간, 일러스트 40.1시간)이며

십야·새벽노동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업량이 많아 철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도 살펴보았더니 경험자가 50%를 넘는 것만 차례로 나열하자면 두통, 눈의 피로 82.5% / 어깨, 목, 팔 등 근육통 76.8%/요통 64.9% /전신피로 62.5%/수면장애 57.5%/복통(위장,소화장애) 52.6%/우울증 52.3% 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 전체 노동자 평균의 최소 2배 이상의 질병 경험이 있음이 조사되어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질병 경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보고 지회 총회는 종합병원에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일해야 마감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본인의 선택이 아닌 업체의 강제로 인해 제한된 시간에 마감해야 하는 ‘연재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재 웹툰은 65컷 기준 주간연재가 통상적인데, 1컷 그리는데 최소 1시간. 그러니 65컷을 보조작가 없이 혼자 그린다면 일주일에 65시간. 여기까지 작화 시간이고 스토리 짜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웹소설은 5500자 기준 2~3일주기 연재가 평균으로 이야기되나, 웹소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일 연재, 매일 연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5500자는 A4용지 기준 4~5장을 채워야 하는 양입니다. 그냥 사실적시 하는 이 발언문도 쓰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창작을 해야 하는 쪽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득합니다. 이렇게 자주 연재해야 독자수가 유지된다며 웹소설은 자주 연재할 것을 권장하고, 웹툰의 경우 가급적 휴재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연재주기 문제는 물론, 현재 업계의 계약엔 분량의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량을 작업해도 추가로 지불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선 많은 분량을 막을 생각이 없으며 휴재 없는 연재와 많은 분량이 창작자의 미덕으로 선호되다 급기야 이것이 창작자의 역량으로까지 연결 이어지는 상황에 불안한 개인은 더욱 자신을 무리시키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도한 노동량 외에도 작품이 게시되는 사이트 대부분이 댓글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댓글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악성 유저들이 댓글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감상이 아닌 창작자에 대한 욕설, 무분별한 비방, 최근에는 페미니즘 사상 검증까지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이로 인한 작가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고통 겪고 있지만 현재는 모두 작가 개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든 cp사든 계약처 어디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작가들 사이에서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신인 작가에게 적극 추천하며,

일을 시작하면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필연적이니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낮은 경우는 사보험 가입도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이렇듯 예술인에게도 산업재해가 있고, 산재보험 가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예술인을 외면하지 말고 예술인 또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K-컨텐츠의 화려한 이면만 볼 것이 아니라, 작가들의 고통스러운 환경 또한 제대로 들여다보고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기를,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 보험이 더욱 더 확대되고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현장발언3

- 성상민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녕하십니까.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활동가이자, 작가노조(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성상민입니다. 작가노조(준)은 소위 ‘작가’로 지칭되는 시, 소설, 희곡, 에세이, 교양서, 학술서, 평론, 번역을 비롯한 모든 집필 창작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작가노조(준)은 현재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분야 중 하나인 ‘문학’에 한정되지 않는, 글에 기반한 창작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예술노동의 상황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판·미디어 산업 역시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약 8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쉬지 않고 흘러오면서도, 종사자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출판사를 비롯한 업계 기업들은 산업의 특성을 변명 삼아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 관행을 바꾸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편집자를 비롯한 출판·미디어업의 종사자도 무수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작가 역시도 크고 작은 피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창작물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은 손에 꼽으며, 단행본을 내는 경우에도 인세나 각종 권리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IMF 이후로 원고료는 20년 넘게 동결된 지 오래입니다.

작가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건강권이라고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값싼 원고료와 인세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몇 시간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한 달의 생계를 위해 매달 수십, 수백 페이지의 글을 쓰느라 매일 같이 밤을 새기도 합니다. 아무리 최대한 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해도 앉은 자세가 장시간 이어지면 목과 허리를 비롯한 다양한 관절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밤샘은 불면증을 비롯한 각종 수면 장애를 촉발하고, 끊이지 않는 마감과 생계에 대한 압박은 작가에게 정신적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매일 같이 꾸준히 운동해라’, ‘작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라’는 말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현 집필 노동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어떤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지도 알 수 없어 막막한 현실입니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이후로 문화예술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어떤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예술 활동증명과 같은 별도의 자격 증명을 요구하고, 산재보험료 역시도 원청이나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말입니까? 게다가 모든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 산재보험임에도, 예술인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임의로 가입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누더기가 ‘산재보험’의 탈을 쓰고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수는 현재도 단 5%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출판사를 비롯한 원청 역시도 예술인 산재보험 시행을 별달리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건이나 환경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오랜 시간 낮은 원고료와 인세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작가들은 더더욱 예술인 산재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에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 노동자는 예술인 산재보험이 제대로 된 산재보험으로 바꿀 것을 2012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이 정당한 요구에 철저히 불통으로 응답하는 상황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개선이 점차 요원해지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인 산재보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온 작가들은 앞으로도 아무리 일하다 몸과 마음이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작가는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의 작가는 일정한 분량의 글을 집필하는 조건으로 출판사나 미디어 기업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을 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원청은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마주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예방 및 보상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오랜 시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해 정부 기관은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작가노조(준)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작가를 비롯한 모든 문화예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전면적용을 실시하라! 그리고 오랜 시간 관행의 베일에 가려져 왔던 작가의 노동권과 건강권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라! 작가들은 더 이상 관행에 순응하며 열악한 조건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외면 말고 즉각 응답하십시오.

## 《작가노조(준) 작가들 사례》

### ■ 칼럼·평론 작가 서찬휘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 계약서를 쓴 경우에 한한다는 겁니다. 칼럼이나 평론 쪽에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난감하지만.

저는 좀 작업하며 무리하다가 (한 5일 밤을 샜던가) 뇌전증이 발발했는데 초반에 기억이 두 달 정도 날아갔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난 김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치료비 청구할 수 있냐 했더니 많이 지나서 안 된단 소리를 들었죠. 어쩔 수 없는 걸 텐데, 차치하고서라도 이쪽 직업은 애초에 작업을 하며 무리라는 걸 입증하는 자체부터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쓰러졌을 때 왜 돈 안 줬어 이게 아니라 이걸 겪고 상담하다 보니 이걸 산재로도 안 되겠구나 나는 입증조차 못 받겠구나 하는 심정이 들었다 정도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칼럼니스트니까요. 특수성을 헤아려라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겐 씨알이 안 먹히겠지만, 예술 노동 자체의 작동 방식이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 ■ SF 작가 정보라

근골격계 질환(오십견, 손목이나 팔꿈치 통증,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등등) 하고 안과 질환, 두통 치통 등 스트레스성 질환 산재 인정 시급합니다.

집필을 할 때도 오래 앉아 있어야 하지만 저처럼 비수도권에서 살면서 행사참가 등으로 이동이 많은 경우에 기차나 버스에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근골격계 질환 유발하구요 운전을 오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운전 오래 하면 목도 아프고 골반이 매우 아픕니다.... π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예술인은 똑같이 프리랜서인데 자기가 100% 부담해서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면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하지요.

### ■ SF 작가 이경희

저는 수면문제(야간노동)/불면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불안증/우울증

도 포함될 거 같고요.

제가 일정 관리를 못해서.. 라고 하면 할말이 없기는 한데 이 노동의 특성상 밤새워 몰아서 일하게 되는 면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이나 칼럼 연재가 있을 경우)

계약액이 낮으면 박리다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반대로 액수가 크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내 작품이 괜찮나 불안이 심해지곤 해요.

## ■ SF 작가 A

현재 소량 다종 출간 기류에 SF작가들의 고강도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 출판 기념 북토크 강연 등 이동 시에 사고 위험도 수반되고요.

겸직 작가님들은 출퇴근 전후 시간에 더블 워크, 트리플 워크 등으로 만성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웹툰 웹소 작가들의 번아웃, 에셀 작가들도 멀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요.

4년차 전업 작가로 지내면서 1년에 연간 2천만원은 벌어보자고 계획을 했는데요.

300만원 선인세 서적 4권이면 = 1,200만원

+ 이에 더해 단편 8편은 써야 2천만원이 나오므로....

1년 동안 (구상 및 버리는 분량 빼고) 3200매는 써야 이 계획이 충족됩니다.

매월 266매 이상은 써야 가능한 분량이라.....

외부 행사 빼고는 매일 쓰고 있고요. 마감 닥쳐오면 하루 10시간쯤은 집필과 교정을 동시에 진행할 때도 있어요. 뭐 회사원일 때도 10시간은 업무했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땐 4대보험이 있었다.....!

저만의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 주변 에셀 작가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각종 요통 인대통증 오십견 눈침침 근육약화 두통 치통 탈모 등등 기본값이 되었어요.

북토크를 위한 이동과 운전 등 사고 위험은 모두 작가만의 것이고요.

무엇보다 출판 업계에선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심의 기획과 홍보가 진행되기에 이 지점에서 <성과>나 <실적>이라는 압박이 작동하고 이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 정책발언

-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법제화’ 시도를 멈춰라! 예술인 ‘현장 요구(당연가입, 전면적용, 사업주 전부 부담)’ 를 들어라!

#### 0. 들어가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예술인/문화예술노동자의 산재 문제를 드러내면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해왔다.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여러 논의는 예술인이 바라는, 예술인에게 필요한 산재보험은 어떠한지 밝혀야 하는 과정이었다.

2021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2월 고용노동부와 현장간담회를 가지고 난 이후,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노·사·정이 함께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 이 있었다. 포럼을 통해 정부와 예술노동자 간 적용 방안에서의 쟁점이 확인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을 검토하면서 예술인에게 맞는 산재보험제도를 설계해나가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 들어 현장을 배제한 채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관계부처 회의’ 를 진행하였다. 이에 문화예술노동연대는 8월 국회토론회를 통해 정부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문체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 을 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어 12월 예술인복지재단 포럼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관계부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활성화 방안” 이라며, ‘임의가입 법제화’ 를 시사하였다. 이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술인/문화예술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가 끝내 외면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방식을 계속해 고수하겠다면, 처음부터

\*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의 연대체.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영화배우조합 등이 함께하고 있다.

다시 짚어나가겠다. 예술 현장의 요구를 끝까지 확인해나가겠다.

## 1. 2012년 시행된 ‘예술인 산재보험’ 의 실체

2010년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2011년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 등 잇따른 예술인들의 죽음으로 예술인의 예술활동/직업적 환경,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사회적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예술인 산재보험’이다.

2012년 당시 민주노총은 “생활고로 죽는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다 내라는 노동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故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예술인 노동자에게 최소한 4대보험이라도 적용하자는 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노동부의 반대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안은 법안 내용 중 산재보험 적용만 남겨진 앙상한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노동부는 ‘문화예술인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법 124조의 중소기업주 특례 조항을 적용’ 하겠다며, ‘산재보험료는 100% 본인 부담이고, 가입도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했다. 과연 생활고로 사망한 故 최고은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산재보험을 가입했을까? 아니 적용 대상에는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정리하면,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 △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문체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 3.5%이 여기에 가입했을 뿐이다.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이 28.5%라고 하지만, 여기서 25.0%는 ‘직장에서의 가입’이다. 그러니 명확히 근로자 가입이 아닌 1인 자영업자 가입인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은 3.5%라고 명확히 말하는 게 맞다.

2022년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방법으로 본인 비용 처리가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본인 개인상해보험(실손보험) 보상 처리가 25.4%나 되었다. 계약상대방 즉 민간상해보험으로 보상(8.6%)을 받거나 산재보험으로 보상(4.4%)받은 경우는 미미했다.

결국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산재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오로지 자기 부담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 2. 그런데도 정부는 임의가입을 확대하겠다, 법제화하겠다고까지 한다!

2023년 8월 국회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요구해온 예술인들을 향해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에서부터, 우선 문체부 산하 국립공연예술단체부터, 가입·확대를 안내·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운영했음에도 도무지 실효성이 없는 이 제도를 열심히 ‘홍보’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라는 데 할 말을 잃는다. 예술인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홍보를 넘어 ‘법제화’ 까지 운운하는 상황이니, 이는 정말 우려스럽다. 만약 정부가 임의가입을 법제화하는 안을 실제 내놓는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만들어질 게 분명하다!

현재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예술인을 특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020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중·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되면서, 예술인 특정 조항(마.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는 별도로 예술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당연가입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이렇게 왜곡된 방식(중소기업사업주특례에서 예술인특례로, 그러나 여전히 임의가입방식)으로 답해온 것이다. 지난 1년간 현장을 배제하고 고용노동부, 문체부 등이 논의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절망스럽다.

## 3. 예술인들의 요구 : 당연가입, 전면적용, 사업주 전부 부담

### (1) 예술인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당연가입’ 해야 한다!

예술인들은 설치 및 사고성 재해, 촬영 등 출장 중 사고,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의 위험성이 높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한편으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기도 하다. 감정노동, 야간노동, 마감노동 등으로 작업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며,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은 도외시한 채 임의가입제도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같은 결과를 낼 게 분명하다. 실효성이 없는, 이름만 있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되풀이하여 만들자고 여태 예술인들이 절박하게 소리 쳐온 게 아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차별없이, 당연하게,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 (2) 모든 예술인에게 ‘ 전면적용 ’ 해야 한다!

### ○ 단계적 적용은 안 된다

몸을 많이 쓰는 무용수 및 연기자,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방송·영화·공연 스태프들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에게는 나중에 적용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2012년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할 당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 설명자료에서 다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목한 직종과 동일하다. 만약 이렇게 단계적 적용으로 제도를 짜졌다면, 결국 지난 10년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활동에 있어 위험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사고가 질병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더 위험한 분야, 덜 위험한 분야로 나눌 수도 없다. 창작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말이다.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웹툰작가가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문학작가들 역시 작품을 위해 취재를 나가고, 출판사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방송작가들은 방송스태프들과 함께 촬영장에 나가기도 한다. 창작이 오로지 ‘ 안전한 ’ 책상 앞에서만 이뤄질 것이라 보는 건, 창작자의 예술 환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다.

2022년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특히 예술인들은 전반적으로 예술 활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정신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고 했다. “사고 경험이 낮았던 문학이나 만화에서 직업 관련 질병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의 비율도 높았는데 특히 만화에서는 61.3%에 달했다” 고 했다. 그런데도 “예술인 산재보험의 초점을 사고에 대한 보장에 맞추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도입의 현실성을 높일지, 혹은 사고와 질병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으로 추진함으로써 제도 설계의 난이도와 운영의 불확실성을 감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마무리 지었다. 만약 사고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학작가들이나 만화작가들은 우선 배제될 것

이다.

###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해서 안 된다. 예술인으로 증명받지 못한다고 해서 예술인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든, 산재보험 관련 연구에 있어서든, 정부는 예술인을 예술활동증명이라는 틀 안에 끼워넣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미 고용보험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만 가입하지 않는다. 일례로 출판분야 종사자들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 아닌데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언급한 이틀(방송 보도국 작가, 게임산업 관련 용역 계약자들, 유튜버, 인플루언서, 프리뷰어 등)은 모두 문화예술산업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예술인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로 하면 된다.

###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이든 저작권계약이든 기타 형식의 계약이든 관계없이 예술인이라면 모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1%의 웹툰작가라고 할지라도 플랫폼이 정한 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엄청난 노동강도로 인한 산재의 위험이 있다. 문학작가들은 출판사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언제든 책상 밖을 벗어난 위험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문화예술용역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 (3)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산재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실질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 ○ 실질적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술인 계약 관행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팀 단위 계약’이다. 팀장이 원청이나 하청과 업무 전체를 모두 포괄하여 계약하는 것인데, 영화나 방송 현장에서는 이 같은 턴키 계약을 근절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 오래 싸워왔다. 영화의 경우 감독급 스태프도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는데,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감독급 스태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급 계약은 중단되어야 하며



제작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화예술용역계약에서 팀 단위 계약이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도입 시 팀 계약에 대한 별도의 운영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얼핏 현 상태를 고려하여 제도를 맞춤 설계하자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을 제도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만약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팀 단위 계약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팀장에게 지우게 될 것이다. 팀 단위 계약의 관행에 대해 예술 현장에서 하루이틀 문제제기만 게 아니다. 이 문제적 행태를 제도로써 인정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방송 분야 문체부 표준계약서(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책임은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및 실질적 사용자에게 있음이 마땅하다. 특히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공 영역의 사업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 및 지자체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역시도 예술인 산재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 ○ 산재의 책임이 있는 진짜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한다. 이에 반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이라고 말해지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본인이 전부를 부담한다.

예술활동의 환경은 예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누가 예술활동의 환경을 결정 짓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자가 산재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예술노동의 특징 중 하나가 ‘마감노동’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 2019 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작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두려움, 수면 부족, 두통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업무수행의 기한준수 요구 및 업무처리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웹툰·웹소설 작가의 경우, 플랫폼이 요구하는 분량과 연재주기를 맞추기 위해 강도 높은 노동과 불안감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출판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도 마찬가지로 출판사가 정한 기한 내 일의 완성을 위해 야간노동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술활동의 환경을 결정하는, 예술인의 활동으로 인해 이윤을 얻는 제작사, 방송사, 출판사, 플랫폼, 정부기관 등이 예술인 산재의 책임을 지며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게 맞다.

#### **4. 마치며 : 정부는 현장 예술인과 직접 논의하라!**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논의를 통해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향을 정리해 밝혀 왔다.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을 위해 정부는 현장 예술인 당사자와 직접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현장을 배제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그 절절한 외침을 외면할 게 아니라면,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에서 배워야 할 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들어진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적용 당사자인 예술인이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하여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예술인과 함께 결정해가야 한다.